

대한비뇨의학재단 연구인재육성사업 규정

제 1조 (목적)

본 연구사업은 비뇨의학 분야를 포함하여 비뇨의학과 관련 의료정책 개발 연구를 통해 학문발전과 국민건강진흥에 기여하고자 한다.

제 2조 (명칭)

본 연구사업의 명칭은 대한비뇨의학재단 연구인재육성사업이라고 한다.

제 3조 (연구자의 자격)

대한비뇨의학회 정회원으로서 비뇨의학의 학문적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연구자로 정한다.

제 4조 (기금의 운영)

기부자가 연구사업 목적으로 매년 기부되는 기부금과 재단적립금으로 연구사업비가 결정되며 전체 연구비의 결정은 연구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

제 5조 (연구자의 심사 선정 및 중간평가)

후보자의 심사 및 연구자의 선정과 선정된 연구 사업의 중간평가에 대하여는 대한비뇨의학회에 위임한다.

제 6조 (연구사업 기간 및 연구비 수여)

연구사업의 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며 연구사업의 규모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.

제 7조

연구자는 연구결과에 대한 결과보고를 사업기간 종료 1년 이내에 대한비뇨의학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, 연구종료 후 3년 내에 SCIE급 학술지에 필수로 게재하여야 한다.

부 칙:

- (1)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.
- (2) 본 규정은 2014년 대한비뇨의학재단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발효된다.